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56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전종덕·박수현·이수진

송옥주 · 서미화 · 한창민

김선민 · 소병훈 · 김준형

정혜경 • 윤종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 제도로 구분되고,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접지불금과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나뉨.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가축 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마을공 동체 공동활동 실시,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 생태 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개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공익기능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러한 준수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식량 생산의 주체로서 농업인등에게 공익기능 증진과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음.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등). 법률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 및 제7호에" 를 "제6호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	<u><삭 제></u>
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	
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	
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	
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잔관은 제14	
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	
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u>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u>	
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u>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	
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
급 또는 등록제한) ① (생 략)	급 또는 등록제한) ① (현행과

71.0)

- 1. ~ 6. (생략)
- 7.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8. 9. (생략)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제1호, 제2호, <u>제6호 및 제7</u> 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 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 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 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 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생 략)

毛
1. ~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8. · 9. (현행과 같음)
②
, 제6호에
<u>.</u>
③ (현행과 같음)